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06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박홍배 · 윤준병 · 박정현
한준호 · 김태선 · 박 정
전용기 · 이정현 · 김남근
이광희 · 김현정 · 이용선
김상욱 · 이용우 · 안도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 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

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현행법의 문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법률의 명확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7조의2 신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7조의2(하도급대금과 관련한 특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3호의 수급인이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제2호의 이미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제2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압류의 효력이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의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을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이 이미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7조의2(하도급대금과 관련한 특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3호의 수급인이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제2호의 이미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제2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압류의 효력이 없다.</u> <u>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의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을 것</u> <u>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이 이미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u>

	을 것
--	-----